

#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관 련 36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4월 22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울시 재정 여건과 시민의 눈높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원생을 제외함(안 제1조, 안 제2조제3호, 안 제3조제1항).

#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대학생 및 대학원생들”을“대학생들”로 하고,

안 제2조제3호 중“대학교 및 대학원”을 “대학(교)”로 하며,

안 제3조제1항 중“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”을 “대학생 학자금대출”  
로 한다.

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”을 “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학자금대출 이자지원) ③ 제 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<u>2년</u>으로 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3조(학자금대출 이자지원) ③ --- ----- ----- ----- ---<u>5년</u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